

1. 개정이유

술 품질인증 인증기관 관련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술 품질인증 인증원 자격요건 완화(안 별표1의2)

나. 술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완화(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제13조제2항 관련)”을 “(제13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가) 중 “후”를 “자로서”로 하고, 같은 1) 나)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1) 다) 및 라)를 각각 라) 및 마)로 하고, 같은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1) 라)(중전의 다)) 중 “「주세법」 제19조”를 “중전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후”를 “자로서”로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임업 또는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임업, 식품 또는 조주(造酒) 분야의 산업기사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기능사는 3년 이상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제1호다목 중 “경고처분”을 “경고처분 또는 2회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으로, “2회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를 “다음 횟수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생략)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는 인증기관 가. (생략) 나. 인력 1) 다음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인증심사원[관능평가요원(사람의 오감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3명 이상 갖추는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농화학, 품질경영, 식품, 생물공학, 식품가공 또는 조주(造酒)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는 3년 이상, 기사 이상은 1년 이상 각각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주세법」 제19조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후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식품·주류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식품산업이나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 또는 식품인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인력 1) (현행과 같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u>갖춘 자로서</u>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임업 또는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임업, 식품 또는 조주(造酒) 분야의 산업기사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기능사는 3년 이상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종전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u>자로서</u>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현행 라)와 같음) (이하생략)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2]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제2호나목의 1회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을 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2회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라.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위반	위반	위반
가. (생략)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경고	지정 취소	
다. ~마. (생략)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2]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제2호나목의 1회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또는 2회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횟수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라.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위반	위반	위반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경고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다. ~마. (현행과 같음)				